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자치행정과	1

(2014. 9. 2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4일

나. 제 출 자 : 이동주 의원 외 7명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9월 10일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나.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5. 제정이유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사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확산 및 내실 있는 공유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6. 주요내용

- 가.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을 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공자원인 사무실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공유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사업 발굴·실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으며,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구청장은 마포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6조는 공유촉진정책으로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안 제7조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범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심의·자문 대상 안건관련 참석불가, 위원의 해촉 사항, 회의 소집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 관리 및 다른 목적 사용금지와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과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동 제정조례안은 민간 부분의 공유문화 저변 확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시민사회 · 기업 · 공공부문간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공유경제 육성 및 협력적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도시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촉진사업에 동참하여 2014년 9월 현재 용강동 삼개나루 서로 좋은 공유센터 외 2개 사업 3,300만원의 공유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고 그 밖에 다양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미 서울특별시 외 타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구에서 공유 촉진 사업에 대하여 다소 늦게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주민에게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은 마땅한 행정조치라고 사료됨.

마포구 공유촉진 사업 추진현황(지원현황)

번호	사업명	사업부서	선정액 (천원)	비고
1	용강동 삼개나루 서로 좋은 공유센터	용강동	13,000	
2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	교통지도과	20,000	
3	주차장 야간개방(주차장 공유)	교통지도과		
4	나눔카(카셰어링)	교통행정과		
5	공유서가, 한복공유, 장갑쉐어링사업	자치행정과		
6	재능, 지식공유	도화동		
계			33,000	

【 공 유 의 의미 】

공유란 무언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텐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텐트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텐트를 가정마다 하나씩 구매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자주 쓰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해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소유에서 공유로 바꿔본다면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텐트를 공유하면 하나의 텐트만 있어도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공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적은 자원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이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유 서울정책을 통해 공공청사 회의실, 유용한 공공데이터, 서울사진 등 서울시가 보유한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나눔카(카셰어링), 남는 방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도시민박,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주차장 공유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적극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바로 공유입니다.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19호, 201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9>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2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9>

제8조의2(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9>
- ②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9>
-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9>
-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신용보증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9>
- 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4.1.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9>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2인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담당관이 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개정 2014.1.9>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19호, 2014.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